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아 설 명

- 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김 원 중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은 시장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등의 체계적・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통시장에 대한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.
- □ 또한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자치구 및 전통시장 관계 기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・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